

미국장로교 헌법 수정 제안서
및
교회 사역 공유에 관한 성공회와 장로교 간 협약

이 규례서 개정안과 협약은 제226회 총회(2024)에서 승인되었으며
총회는 각 노회가 이에 대해 투표하도록 권고했다.

정서기의 말

미국장로교 제226회 총회(2024)는 *규례서*에 대해서 제안된 수정안들을 승인하였고, 찬반 투표를 하도록 노회에 보내도록 권고했습니다. 만일 이 수정 제안서가 승인된다면, 헌법이 개정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장로교 제226회 총회(2024)는 G-5.0203에 따라 '교회 사역 공유에 관한 성공회-장로교 협약'을 승인하고 각 노회에 찬반 투표를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노회 투표를 준비할 때 참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 투표 전에, 노회원들과 서기가 각 수정 제안과 관련 정보를 검토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각 수정 제안에는 총회가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안건을 추적할 때 활용했던 안건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기록 전체를 [PC-Biz](#)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총회의 안건 번호 마다 PC Biz로 연결되는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혹은 [PC-Biz\(www.pc-biz.org\)](#)로 가서서 검색(Search)을 누르시고 안건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안건 번호를 누르시면 안건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각 수정 제안에는 헌법 자문위원회와 기타 자문 및 옹호 조직체가 작성한 근거와 자문을 요약하여 첨부해 놓았습니다. 자문이 적용되었던 안건 원안과 총회가 승인한 최종안은 다를 수도 있음에 주의해 주십시오.
- 각 제안된 수정안이 분리되어 식별가능하다면, 노회는 일괄합의 안건이나 옴니버스 동의를 투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개정안과 협약에는 24-A, 24-B 등의 추적 번호가 있습니다.
- 투표하기 전에 노회원과 서기는 교회 사역 공유에 관한 성공회-장로교 협약(안)도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회 서기는 총회 사무국에 수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투표 결과는 2025년 7월 4일 11:59 pm (동부시간)까지 보내주십시오. 수정안과 협약에 대한 투표 결과는 정서기의 포털을 통해서 입력되어야 합니다. 매달 업데이트된 집계가 모든 노회 서기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계획된 시간 안에 2025-2027년도 *규례서*를 수정하고 출판하기 위해서, 마감 시간 이전에 투표 결과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 제안된 수정안 투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지현

미국장로교 총회 정서기

색인

24-A - F-1.0403	4
24-B - G-1.0104	7
24-C - G-2.0104b	9
24-D - G-2.0504b	13
24-E — G-2.0504b	14
24-F - G-2.0610	17
22-G - 2.0901	20
24-H — G-3.0106	23
24-I - G-3.0302d	25
24-J - G-3.0501	27
24-K - D-7.0501	29
24-L - D-7.0902b	31
24-M 교회 사역 공유에 관한 성공회와 미국장로교 간의 협약문	34

Copyright © 2024
총회 사무국
미국장로교

미국장로교 노회는 출판 주체의 사전 허가 없이도 이 출판물을 복사할 수 있다.

24-A — F-1.0403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열린 태도

F-1.0403 다양성 속의 일치 (POL-01 1)

제 226회 총회(2024)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F-1.0403 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까?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F-1.0403 다양성 속의 일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일치는 교회 구성원의 풍부한 다양성 속에 반영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인종, 민족,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지역, 신학적 이해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연합하신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중에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 미국장로교는 미국장로교 회원인 모든 개인과 모임이 미국장로교의 예배와 운영과 새로운 삶 속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떤 구성원도 헌법에 진술된 것 이외의 어떤 다른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

배경과 근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교회 공의회들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장 포용적이고 확고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촉구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왔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교회들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느낀다. 제 223회 총회(2018)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했다:

1. 제223회 총회(2018)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폭넓게 포용하고 도움이 필요한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사명을 기뻐하며, 성소수자들의 사역을 위한 은사를 확인하고 교회와 세상에서의 그들의 섬김을 기뻐한다.
5. 총회는 또한 지속적인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 환대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불편함이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계속해서 더 깊은 이해와 진정한 환영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10. 총회는 미국장로교의 모든 교회와 공의회가 환영의 폭을 넓혀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다른 모든 공교회들도 그렇게 하도록 장려한다.

우리는 이러한 장려에 따라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보호 계층으로 확립될 것을 촉구한다.

헌법 자문 위원회(ACC)의 권고 사항

F-1.0403 뿐만 아니라 개별 교회에 관한 G-1.0302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처럼, 우리는 성경과 헌법의 증거가 모든 사람을 (보편적) 교회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포용한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도 신앙고백과 관련이 없는 이유로 교인됨을 거부당하지 않는다."(*미국장로교 헌법*, "벨하 신앙고백" 참조): 제1부 신앙고백서 (2016), 10.3 참조). 헌법 개정을 통해 이 원칙을 긍정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증언과 일치한다.

LGBTIA+ 옹호 태스크포스의 의견

제223회 총회(2018)에서 총회는 "교회 생활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은사를 축하하는 것에 관한" 안건 11-13을 승인했다 이 성명은 미국 LGBTIA+들의 신실함과 섬김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헌의안은 지난 총회들(최소 2014년 221차 총회부터)에서 교회와 전 세계 LGBTIA+를 지원하기 위해 통과된 여러 헌의안 중 하나이다.

따라서 LGBTIA+ 옹호 위원회는 "인종, 민족, 나이, 성별[등]"과 함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도 인격의 근본적인 차원으로, 미국장로교의 "예배, 운영, 새로운 삶"에 참여하거나 보편교회 구성원이 되는 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헌신을 계속 구현할 것을 총회에 권고하는 바이다.

여성 및 젠더 정의 옹호 위원회(ACWGJ)의 권고사항과 자문

F-1.0403은 다양성 속의 일치의 원칙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의 성경적 근거로 갈 3:27-29을 인용한다. ACWGJ는 갈 3:27-29과 함께 골 1:16-17도 인용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다양성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로교 체제의 기초'에서 인간 경험의 깊이를 더 잘 추정할 수 있는 언어로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을 더욱 굳건히 한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진 개인에 대한 열린 태도와 환영의 신학적, 교회적, 성경적 토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만 '좋은 소식'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

권고 사항 및 자문 - 사회정의 정책 자문위원회(ACSWP)

우리는 교회가 억압자이자 옹호자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피해를 입은 형제자매들의 치유를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223회 총회(2018)를 맞이하여,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사랑에 가득차 신실하고 용기있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기린다. 우리 교회는 성소수자의 기여로 풍요롭고 활기차며

생명력이 넘치게 되었으며, 인종, 민족, 성별, 나이, 능력, 지역, 신학적 신념에 따라 헌법적 보호가 확대되었듯이 이들에게도 동일한 헌법적 보호가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조언 및 자문—인종 평등 옹호 위원회(REAC)

REAC는 미국장로교가 이미 "교회 생활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은사를 축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밟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6월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제223회 총회에서 미국장로교는 성소수자 포용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헌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미국장로교는 POL-01을 승인함으로써 포용성에 대한 교단의 약속과 마태복음 25장 사역을 확고히 하고 교단 전체에 수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총회 대표성 위원회(GACOR)의 의견

GACOR는 주로 규례서 제1장 (F-1.0403에 대한 변경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GACOR는 규례서의 이부분에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점을 두고 있다. GACOR는 이미 미국장로교의 구조, 시스템, 리더십 내에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형평성과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그러나 이 안건이 승인되면 GACOR의 역량이 커질 것이다. 그리하여, 더 많은 교회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우리에게 존재하는 다양성이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고 움직이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철차나 규범 면에서 이해하도록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의 삶에 봉사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지도자와 교인을 인정하는 것이다(요엘 2:28-29/행전 2:17-18).

총회 정책 위원회는 안건 POL-01 1을 35/3로 승인했다. 제226회 총회(2024)는 안건 POL-01 1을 389/24로 승인했다.

POL-01에 대한 기록 전체를 보려면, [전문은https://www.pc-biz.org/search/3001122](https://www.pc-biz.org/search/3001122) 에서 참조하라.

24-B — G-1.0104

회중

G-1.0104 다른 형태의 성도 공동체(소규모 예배 공동체 등)(POL-03)

제 226회 총회(2024)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1.0104를 운영 체제에 다음과 같이 추가해야 합니까?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1.0104 **다른 형태의 성도 공동체(소규모 예배 공동체 등)**

교회로서 합법적으로 조직되는 전통적인 형태의 회중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공동체가 미국장로교와 관계를 갖고 존재하며 기능하기를 원하면, 그 공동체를 돌보며 지원할 수 있도록 노회와 교회가 함께 노력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인정된 단체는 상호합의 하에 노회가 승인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적어도 한 명의 사역 장로가 그 리더십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공의회(당회 또는 노회)가 재정적, 법적, 징계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가운데 활동해야 한다. 이 공동체를 지원하는 공의회는 그 예배 공동체와 협의하여 규례서의 예배 지침에 따라 그 공동체 내에서 성례전을 집전하도록 승인해야 한다. 이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미국장로교의 세례 교인, 활동 교인 또는 관련 교인으로 공식적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구성원에 대한 교적부는 이 공동체를 지원하는 공의회가 관리해야 한다. 이 공동체는 그를 지원하는 공의회와 무관하게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되며, 재정적, 법적, 또는 계약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이 공동체는 그를 지원하는 공의회(당회 및/또는 노회)에 이 공동체가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배경과 근거

1. 제안된 개정안의 의도는 예배와 양육, 제자 훈련, 선교에 있어 미국장로교 정체성을 가지고자 하는 소규모 예배 공동체를 위해, 최소한의 유연하고 적응 가능한 수준의 역사적으로 개혁주의적인 운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문구는 현행 헌법 조항 및/또는 안수의 신학과 실천을 탐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권고 사항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6. 주관하는 공의회(당회 또는 노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필요에 따라 재정, 법률 및 징계 문제를 감독하는 '유산 조직'의 역할이 될 것이다.

미국장로교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단체와 그 활동의 적절성을 분별할 책임이 있는 주요 기관은 이러한 노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회는 모든 소속 교회들과 협의하여 성경의 권위를 따르며, *신앙고백서*의 인도를 받고, *규례서*에 따라서 운영된다.

헌법 자문 위원회의 권고 사항

헌법 자문위원회는 이 문구가 헌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총회에 구두로 권고했다.

총회 대표성 위원회 (GACOR)의 의견

총회 대표 위원회는 이 안건의 승인을 권고한다. 다양한 유형의 새예배 공동체(NWC)가 있지만, 대표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GACOR는 많은 NWC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소외된 커뮤니티, 특히 소수 인종 커뮤니티와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을 섬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NWC는 21세기에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구할 수 있는 활기차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 그러나 현재 *규례서*의 규정에 따르면 NWC 참가자가 세례의 성례를 받거나 더 큰 교회의 회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교회 차원의 장치는 없다. NWC의 입지 부족은 교회의 모든 공의회에서 혼란과 좌절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성 부족을 초래했다. 이는 이러한 NWC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쳐 교회 참여자와 조직의 "하위 계층"을 형성하는 한편, 교회의 연례 통계 보고를 통해 교회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GACOR의 역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안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필요한 감독을 제공하여 NWC 참가자들이 미국장로교 내에서 완전한 지위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권고 사항 및 자문 - 사회정의 정책 자문위원회(ACSWP)

사회 증인 정책 자문 위원회(ACSWP)는 제226회 총회(2024)가 POL-03을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이 현의안은 제 225회 총회(2022)가 이룬 진전을 이어나가, 총회 사무국 (OGA)이 이민자 신앙 단체, 예배 공동체 및 새 교회 개척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개발하도록 한다. 결정적으로, 이 현의안은 개혁주의 정체에 뿌리를 둔 적응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총회 정책 위원회는 현의안 문구를 수정한 후 논평을 달아 안건 POL-03을 35/3로 승인했다. 제 226회 총회(2024)에서는 논평과 함께 개정안 건 POL-03을 391/14로 승인했다.

POL-03에 대한 기록 전체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search/3001126>을 참조하라.

24-C — G-2.0104b

교회의 직제 사역

G-2.0104b 은사와 자격(POL-01 2)

제 226회 총회(2024)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0104b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까?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직제 사역 기준에는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기쁘게 순종하려는 교회의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 (F-1.02). 안수 또는 위임을 책임지는 공의회(G2.0402; G-2.0607; G-3.0306)는 각 후보자의 소명, 은사, 준비 상태, 직제 사역 책임에 대한 적합성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후보자의 안수와 위임에 관한 헌법 질문들(W-4.0404)과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칙 (F-3.01)과 F-1.0404의 참여, 대표성, 차별 금지 원칙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이행할 능력과 헌신된 자세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하는데, 이 사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공의회는 각 후보자에게 표준을 적용할 때에, 성경과 신앙고백서를 따라야 한다.

배경과 근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교회 공의회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교회가 역사적으로 가장 포용적이고 확고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촉구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왔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교회들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느낀다. 제 223회 총회(2018)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했다:

1. *제223회 총회(2018)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폭넓게 포용하고 도움이 필요한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사명을 기뻐하며, 성소수자들의 사역을 위한 은사를 확인하고 교회와 세상에서의 그들의 섬김을 기뻐한다.*
5. *총회는 환대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어려움이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적인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 계속해서 더 깊은 이해와 진정한 환영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10. *총회는 미국장로교의 모든 교회와 공의회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영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하며, 다른 모든 공교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다.*

우리는 이러한 격려에 따라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보호 계층으로 확립될 것을 촉구한다.

헌법 자문 위원회의 권고 사항

G-2.0104b에 "그리고 F-1.0403의 참여, 대표성, 차별 금지 원칙에 따라"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안수 및/또는 임직 전 모든 목사안수 후보자의 심사에서 F-1.0403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한다.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의회는 안수 및/또는 임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후보자의 안수와 위임에 관한 헌법 질문들(W-4.0404)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이행할 능력과 헌신된 자세가 있는지를 심사해야 하는데, 이 사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2. 다음과 관련된 F-1.0403에 명시된 교인의 참여, 대표성 및 차별 금지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후보자의 능력과 세심함을 판단한다.
3. (보편적) 교회의 '다양성 안에서 일치'의 기본 원칙, 그리고
4. 미국장로교 소속 개체 교회는 예배, 운영 및 새로운 삶에 대한 완전한 참여와 대표성을 교인들 내에서 모든 개인 또는 그룹에게 보장한다. 그리고 모든 교인은 본 헌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이유로 참여 또는 대표성을 거부당해서는 안된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후보자가 심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F-1.0403이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교회의 다양성 속의 일치를, 미국장로교 교회 회원(교인 자격과 관련된 참여 및 대표성에 관련해서는 개체교회에 대해 명시한 내용을 인정하도록 요구한다.

총회 유권 해석(1987, 151, 15.252, Com. 17-87)에 따르면 교회 회원 자격에 대한 결정은 집사, 권사, 말씀과 성례전 목사의 안수 및/또는 임직에 대한 결정과 다르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85년 총회 상설재판위원회는 집사, 사역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선거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의 헌법적 틀에 구속된다고 결정했다(회의록, 1985년 제1부, 118--23쪽, 뉴욕 블레스델 연합 장로교회 외 1건) 서부 뉴욕 노회).

공의회가 안수 및/또는 임직 후보자를 기도하며 분별하고 심사할 때, 공의회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전체 교회를 대표하여 정당한 실사를 거쳐 행동해야 한다. 직제 사역 기준에는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기쁘게 순종하려는 교회의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 (F-1.02). 안수 또는 위임을 책임지는 공의회(G2.0402; G-2.0607; G-3.0306)는 각 후보자의 소명, 은사, 준비 상태, 직제 사역 책임에 대한 적합성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공의회는 각 후보자에게 표준을 적용할 때에, 성경과 신앙고백서를 따라야 한다.

더 큰 교회의 교인됨이 포용적인 동시에 다양성 속의 일치를 보여주어야 하는 경우, 직제 사역에 대한 안수 및/또는 위임에 있어 후보자가 장로교 정치의 헌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장로교의 직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특정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직제 사역을 찾거나 직제 사역을 통해 섬기는 동안, 직제 사역자들의 양심은 교회의 기준에 따라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된다. 한 개인이

개혁신앙과 그 체제의 본질에서 벗어났는지에 관한 결정은 일차적으로 해당 개인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당 개인이 소속되거나 소속될 공의회(즉 당회나 노회)의 책임이다.

현재 시험 기준은 이미 후보자가 W-4.0404e 즉, 우리 교단의 운영 절차를 따르고 규율에 순종하겠다고 확인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심사 요건에 제안된 언어를 추가하는 것은 중복된다.

LGBTIA+ 옹호 태스크포스의 의견

이 제안의 핵심은 신임 교역 장로, 사역 장로 및 집사가 사역을 하면서 F-1.0403에 열거된 정체성 표지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안수 준비/심사 과정(안수식 전) 중에 명시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교회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공정하며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한편으로, 안수를 위한 헌법 질문에는 이미 "우리 교단의 운영 절차를 따르며"라는 헌신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은 중복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분명히 현재 버전의 F-1.0403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는 안수받은 개인이 인종, 나이, 성별 등을 이유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지는 못했다. 또한, 이 헌의안 심사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 질문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소수자 옹호위원회는 총회가 안수 준비/심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안수 및 임직을 위한 헌법적 질문(W-4.0404)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헌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함으로써 안수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 "참여, 대표성 및 차별 금지의 원칙" [G-2.0104b에 추가하도록 제안함]. 또한 G-20104b에 대한 변경 사항은 F-1.0403에 표현된 정서에 대한 조치이므로 두 개의 개정안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평가에는 일관된 생각이나 신념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F-1.0403에 명시된 정체성 표지에 근거해서 방해하거나 막지 않겠다는 약속만 있으면 된다. 당사는 성소수자 정체성뿐만 아니라 F-1.0403에 나열된 다른 정체성(모두 성소수자 정체성과 교차할 수 있고 실제로 교차한다)에 대해서도 이를 지지한다. 교회에는 다양한 정체성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평신도 및 안수 사역에 부름을 받았으며, 모두가 차별이나 방해 없이 교회에서 존재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 및 젠더 정의 옹호 위원회(ACWGJ)의 권고 사항과 자문

여성과 젠더 정의 옹호 위원회는 제226회 총회(2024)에서 POL-01 2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원래 헌의안은 규례서의 두 부분에 대한 변경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ACWGJ는 헌법 자문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두 부분을 분리하여 검토했다. 안수는 이미 우리에게 "교단의

정치에 따라 다스림을 받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G-2.0104b는 고전 12: 12-13에 명시된 대로 환영과 개방성을 포함하는 세례 소명을 적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자 공동체로서, 안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소명을 구체적으로 명명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때만, 우리는 정의를 옹호하고 악인에 대항하여 일어나며 악인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위해 설 수 있다.(시편 94:16). 침묵과 같은 모호한 긍정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인정받지 못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영속화할 뿐이다. 참여, 대표성, 차별 금지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명명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선례가 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ACWGJ는 총회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진 개인을 특별히 옹호하기 위해 성소수자 형평성 옹호 위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는 일을 지지한다.

총회 정책위원회는 안건 POL-01 2을 28/10로 승인했다. 제226회 총회(2024)에서 안건 POL-01 2을 수정하여 297/130로 승인했다.

POL-01 02에 대한 기록 전체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search/3001122>를 참조하라. POL 01 2에 대한 총회의 10번째 본회의 토론 동영상은 <https://ga-pcusa.org/vide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D — G-2.0504b

목회 관계

G-2.0504b 임시 목회 관계 (POL-05)

제 226회 총회(2024)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0504b 임시 목회 관계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까?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

임시 목회 관계의 명칭, 그리고 임기는 노회가 결정해야 한다. 임시 목회 관계에 있는 목회자는 ~~12~~36개월을 넘지 않는 일정 기간으로만 사역하도록 청빙 받는다. 이 기간은 노회가 승인하면 갱신할 수 있다."

배경과 근거

점점 더 많은 교회가 임시 목회자에 의해 섬김을 받고 있다. 지정된 봉사 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면 이 회중들은 더 강한 안정감을 갖게 될 것이다. 당회와 노회가 매년 계약을 재협상할 필요가 없다면 상당한 시간과 서류 작업을 절약할 수 있고, 지속적인 계약 협상보다는 임시/과도기 사역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교회가 한 목회적 관계의 끝에서 다른 목회적 관계의 시작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12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회는 12개월 이상의 임시 목회자 계약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자문 위원회(ACC)의 권고 사항

헌법 자문위원회는 제226회 총회(2024)에서 POL-05를 승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헌법 자문위원회는 총회에 POL-05가 임시 목회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화된 기간을 유지하고 현재의 사역 상황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문구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총회 정치위원회는 안건 POL-05를 34/0으로 승인했다. 제226회 총회(2024)는 안건 POL-05를 397/8로 승인했다.

POL-05에 대한 기록 전체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search/3001129>을 참조하라.

24-E — G-2.0504b

목회 관계

G-2.0504b 임시 목회 관계 (POL-08 2)

제 226회 총회(2024)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0504b 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까?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2.0504b 임시 목회 관계

임시 목회 관계는 노회의 승인을 받으며, 공식 청빙이나 위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개체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거나 담임 목사가 직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노회의 승인을 받아 당회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후보생, 또는 사역장로와 임시 목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식적인 청빙 절차를 밟지 않으며 공식적인 위임식을 하지 않는다.

임시 목회 관계의 명칭, 그리고 임기는 노회가 결정해야 한다. 임시 목회 관계에 있는 목회자는 12달을 넘지 않는 일정 기간으로만 사역하도록 청빙 받는다. 이 기간은 노회가 승인하면 갱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시 목회 관계로 사역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바로 담임목사, 동사 목사, 또는 부목사가 될 수 없다.

임시 목회 관계가 종결될 때, 비공개 계약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기밀 유지 계약이라고도 하는 비공개 합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밀 자료, 지식 또는 정보의 개요를 명시하는 합의이다. 이러한 계약은 계약에 서명한 당사자를 구속하며, 계약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사람과 계약에 포함된 정보를 논의할 수 없도록 막는다.

배경과 근거

안수 시 서약에서 우리(사역 장로, 교역 장로, 집사)는 서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것을 약속한다(W-4.0404). 비공개 합의는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며,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법원이 정보 공유를 금지할 수 있는 특정한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비공개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합의 없이 판결을 준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설 사법위원회(PJC)의 적절한 명령도 당사자가 체결한 모든 합의보다 우선하며, 이는 PJC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교회와 목회자와 관련된 비공개 합의는 일반적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해가 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목회 관계의 해소는 종종 정보의 부재로 인해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을 추측하여 목회자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로 낙인찍거나, 교회를 목회자에게 피해를 주는 교회로 낙인찍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는 이혼과 유사하다. 또한, 목회 관계 해소는 목사나 교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충격적인 사건이 포함된 경우, 비공개 합의로 인해 교회가 집단적 트라우마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트라우마를 확실히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인한 교회 내 역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 목회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헌법 자문 위원회의 권고 사항

헌법 자문위원회는 제226회 총회(2024년)에서 POL-08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이 헌의안은 임명 및 임시 목회 관계의 해산 시 비공개 합의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의 두 섹션, G-2.0901과 G-2.0504b를 개정하고자 한다. "기밀유지서" 또는 "기밀유지 계약"이라고도 하는 계약상 비공개 합의에 대한 총회의 상임 사법전권 위원회(GA PJC)의 결정은 수없이 많이 있었다. 헌법 자문위원회는 총회에 안건 POL 08이 이러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규례서*에 명시하는 것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GA PJC(1990, 202-1, Baumann v. Bellefield Church); GA PJC(2006, 217-1, Hope 등 v. Pby of San Francisco); GA(1998, 165, 16.0199, Req. 98-4) 참조)

권고 사항 - 사회정의 정책 자문위원회(ACSWP)

사회 정의 정책 자문 위원회(ACSWP)는 제226회 총회(2024)가 TWE-08을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정책 성명서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일](#)"(1995)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손으로 만든 어떤 작품에서도 빛나기 전에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작품에서 빛난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응답으로서, 신실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빛을 받을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속하실 때에, 우리도 우리의 일을 통해 이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이웃과 모든 피조물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함으로써, 다른 직원들과 우리 자신을 존중과 연민, 감사로 대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일의 불완전함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이라고 이해한다."

회중과 목회자, 교육자 및 기타 교회 직원 간의 청빙이 언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해고의 조건으로 기밀 유지 계약을 요구하는 관행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신실한 인간의 모든 일에 비취질 기회를 막고, 서로를 존중과 연민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며, 개인과 교회가 우리 사역의 불완전성에 대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막는다.

총회 정책위원회는 ACC의 권고 사항을 따라 현의안 문구를 수정하고, 안건 POL-08 2을 40/0으로 승인하였다. 이후 제 226회 총회(2024)는 안건 POL-08 2을 393/11으로 승인하였다.

POL-08에 대한 기록 전체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search/3001169>을 참조하라.

24-F — G-2.0610

목회 준비

G-2.0610 특별한 상황에 따른 조정(ORD-05)

제 226회 총회(2024)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0610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까?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노회가 판단한 경우, 노회는 G-2.06 에 적혀 있는 안수 요구 사항의 어느 부분이라도 4분의 3의 찬성에 의해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G-2.0607d의 사항은 면제할 수 없다. 만일 후보생이 G-2.0607d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노회가 판단한 경우, 노회는 표준 안수시험에서 다루는 부문에서의 사역에 후보생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하는 다른 수단을 4분의 3의 찬성에 의해 승인해야 한다. 안수 요구사항을 면제한 이유나 사역 준비 상황을 입증하는 다른 수단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노회 회의록에 포함해야 하며,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옮겨갈 노회에도 알려야 한다. ~~안수 요구사항을 면제한 이유나 사역 준비 상황을 입증하는 다른 수단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안수 요구 사항 면제나 사역 준비 상황을 입증하는 다른 수단 ~~이 있다는 것을 기밀 사항이 있다면 이를 빼고~~ 노회 회의록에 포함해야 하며,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옮겨갈 노회에 알려야 한다.

배경과 근거

편집자 주: 이 근거는 총회에서 대폭 수정된 원래의 안건에 첨부된 것이다.

교회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섬기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교회 그리고 돌봄을 받고 있는 노회와 함께 거룩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회와 지망생 또는 후보자는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이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힘을 실어주는 책임과 신뢰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노회의 영구 기록에 넣는 것은 이러한 책임과 신뢰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단지 해악을 증가시키고 심화시킬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노회의 돌봄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시험 요건 면제 이유에 대한 이 전체 설명에서 이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사역 준비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그 사람의 목회자로서의 신실한 섬김에 대한 장기적인 이야기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 개정안은 헌법의 본문을 운영 매뉴얼로 만들지 않음으로써 단순화하고, 교회 안팎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학습 차이, 문화적 역량 및 신경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목소리를 낸다. 제안된 개정안은 노회가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 목회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노회가 이 거룩한 부르심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서로를 신뢰하도록 격려한다.

헌법 자문 위원회의 권고 사항

편집자 주: 이 근거는 총회에서 대폭 수정된 원래의 안전에 첨부된 것이다.

헌법 자문위원회는 제226회 총회(2024)에서 ORD-05를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 헌의안은 목사안수 후보자가 안수 요건 면제 또는 준비도 평가를 위한 대체 수단을 요구할 때 “목회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치의 “이유에 대한 전체 설명”을 노회록에 기록하고 “질의자 또는 후보자가 소속된 노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G-2.0610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준비도 평가를 위한 대체 수단”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즉 헌의안이 "잠재적으로 트라우마를 낳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노회의 영원한 기록에 남기는 것"이라고 표현한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헌의안은 G-2.0610의 마지막 문장 전체를 지우라고 하였다.

헌법 자문위원회는 첫째, G-2.0610에 설명된 특정 상황에 대한 조정은 G-2.0607에 설명된 사역을 위한 최종 평가 및 협상의 일부로서 발생하며, 이는 후보자가 노회에 의해 심사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입증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후보자를 인증할 때, 노회는 후보자에게 부여된 면제 또는 해당 인증을 부여하는 데 사용된 대체 평가 양식에 대해 해당 사실을 후보자를 받는 노회에 알려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또한 노회는 4분의 3의 투표로 이러한 조정을 승인해야 하므로 해당 조치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노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G-2.0610에서 특별히 그렇게 요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헌법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마지막 문장에서 노회 회의록의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노회가 판단한 경우, 노회는 G-2.06에 적혀 있는 안수 요구 사항의 어느 부분이라도 4분의 3의 찬성에 의해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G-2.0607d의 사항은 면제할 수 없다. 만일 후보생이 G-2.0607d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노회가 판단한 경우, 노회는 표준 안수시험에서 다루는 부문에서의 사역에 후보생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하는 다른 수단을 4분의 3의 찬성에 의해 승인해야 한다. ~~안수 요구사항을 면제할 이유나 사역 준비 상황을 입증하는 다른 수단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안수 요구사항 면제나 사역준비 상황을 입증하는 다른 수단은 노회 회의록에 포함해야 하며,~~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옮겨갈 노회에도 알려야 한다.

총회 안수 위원회는 현의안 문구를 수정하고 ACC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현의안을 개정하였다. 그 후 안건 ORD-05을 37/6(찬/반)으로 승인하였다. 이후 제 226회 총회(2024)는 안건 ORD 05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ORD-05에 대한 기록 전체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search/3001125> 참조하라.

22-G — 2.0901

목회 관계의 해소

G-2.0901 공동의회 (POL-08 1)

제 226회 총회(2024)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2.0901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까?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위임 목회 관계는 오직 노회만 해소할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자,' 개체교회, 또는 노회 중 어느 누가 목회 관계 해소 절차를 시작했든, 공동의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하고 목회 관계 해소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해야 한다. *비공개 합의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기밀 유지 계약이라고도 하는 비공개 합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기밀 자료, 지식 또는 정보의 개요를 명시하는 합의이다. 이러한 합의는 합의에 서명한 당사자를 구속하며,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사람과 계약에 포함된 정보를 논의할 수 없게 만든다.

배경과 근거

안수 시 서약에서 우리(사역 장로, 교역 장로, 집사)는 서로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것을 약속한다(W-4.0404). 비공개 합의는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며,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법원이 정보 공유를 금지할 수 있는 특정한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당사자들의 비공개 합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합의 없이 판결을 준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설 사법위원회(PJC)의 적절한 명령도 당사자가 체결한 모든 합의보다 우선하며, 이는 PJC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교회와 목회자와 관련된 비공개 합의는 일반적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해가 되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목회 관계의 해소는 종종 정보의 부재로 인해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을 추측하여 목회자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로 낙인찍거나, 교회를 목회자에게 피해를 주는 교회로 낙인찍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는 이혼과 유사하다. 또한, 목회 관계 해소는 목사나 교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충격적인 사건이 포함된 경우, 비공개 합의로 인해 교회가 집단적 트라우마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트라우마를 확실히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인한 교회 내 역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 목회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헌법 자문 위원회(ACC)의 권고 사항

헌법 자문위원회는 제226회 총회(2024년)에서 POL-08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이 헌의안은 임명 및 임시 목회 관계의 해산 시 비공개 합의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의 두 섹션, G-2.0901과 G-2.0504b를 개정하고자 한다. "기밀유지서" 또는 "기밀유지 계약"이라고도 하는 계약상 비공개 계약에 대한 총회의 상임 사법전권 위원회(GA PJC)의 결정은 수없이 많이 있었다. 헌법 자문위원회는 총회에 항목 POL 08이 이러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규례서*에 명시하는 것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GA PJC(1990, 202-1, Baumann v. Bellefield Church); GA PJC(2006, 217-1, Hope 등 v. Pby of San Francisco); GA(1998, 165, 16.0199, Req. 98-4) 참조)

조언 - 사회정의 정책 자문위원회(ACSWP)

사회 정의 정책 자문 위원회(ACSWP)는 제226회 총회(2024)가 POL-08을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정책 성명서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일](#)"(1995)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손으로 만든 어떤 작품에서도 빛나기 전에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작품에서 빛난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응답으로 행하는 신실한 인간의 모든 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속하실 때에, 우리도 우리의 일을 통해 이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이웃과 모든 피조물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함으로써, 다른 직원들과 우리 자신을 존중과 연민, 감사로 대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일의 불완전함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이라고 이해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손으로 만든 어떤 작품에서도 빛나기 전에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작품에서 빛난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응답으로 행하는 신실한 인간의 모든 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속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이웃과 모든 피조물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함으로써, 다른 직원들과 우리 자신을 존중과 연민, 감사로 대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일의 불완전함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이라고 이해한다."

회중과 목회자, 교육자 및 기타 교회 직원 간의 청빙이 언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해고의 조건으로 기밀 유지 계약을 요구하는 관행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신실한 인간의 모든 일에 비취질 기회를 막고, 서로를 존중과 연민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며, 개인과 교회가 우리 사역의 불완전성에 대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막는다.

총회 정책 위원회는ACC의 조언에 따라 현의안 문구를 수정하고 안건 POL-08 1을 40/0(찬/반)으로 승인하였다. 이후 제 226회 총회(2024)는 안건 POL-08 1을 393/11으로 승인하였다.

POL-08에 대한 기록 전체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search/3001169>을 참조하라.

24-H — G-3.0106

공의회 일반 원칙

G-3.0106 사명의 수행(POL-11)

제 226회 총회(2024)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3.0106의 4번째 문단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까?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모든 공의회들은 다음의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성적 비행 정책, 괴롭힘 관련 정책, 유소년과 *취약 성인* 보호 정책, 반인종차별 정책. 각 공의회는 경계 교육과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이 필수 요구 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경계 교육에는 성적 비행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은 최소한 36개월마다 재인증되어야 한다.

배경과 근거

이 개정안은 우리 교회와 협의회 내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 총회에서 수행한 중요한 작업을 기반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교회의 모든 공의회가 취약한 성인들을 보호 정책에 포함시킬 수 있는 헌법상의 의무를 만들 것이다. 수정된 문구는 우리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 "취약한 성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인정한다. 정책 프레임 워크에 대한 이러한 개선은 최고 수준의 윤리적 행동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준다. 포용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핵심 가치이다. 정책 보호를 취약한 성인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포용성, 연민, 정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는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사명을 강조한다.

헌법 자문 위원회의 권고 사항

헌법 자문위원회는 제226회 총회(2024년)에서 POL-11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항목 POL-11은 취약한 성인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도록 필수 보호 정책 목록을 확장하여 G-3.0106을 개정하는 것이다. 헌법 자문위원회는 헌법이 운영 지침서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헌법 자문위원회는 목록의 생성 또는 확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목록에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모든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누락된 항목은 허용이 아닌 제외 항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호 대상자 목록에 '취약한 성인'을 추가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G-3.0106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자문위원회는 '취약한 성인'의 정의가 법적 관할권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의회는 정책을 개발할 때, 해당 지역의 법적 요건을 참조해야 한다.

권고 사항 및 자문 - 사회정의 정책 자문위원회(ACSWP)

사회 정의 정책 자문 위원회(ACSWP)는 제226회 총회(2024)가 POL-11을 개정하여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이 서곡에 대해 ACSWP는 다음과 같은 수정을 권고한다.

모든 공의회들은 다음의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성적 비행 정책, 괴롭힘 관련 정책, 유소년[과 지적 장애가 있는 성인, 취약성인] 보호 정책, 반인종차별 정책.

이 언어는 *규례서안*의 여러 언급들과 일치한다.

총회 정책 위원회는 안건 POL-11을 37/1로 승인했다. 제226회 총회(2024년)는 안건 POL-11을 403/1로 승인했다.

POL-11에 대한 기록 전체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search/3001131>을 참조하라.

24-I — G-3.0302d

노회

G-3.0302 대회, 총회와의 관계(GAP-05)

제 226회 총회(2024)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3.0302 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까?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G-3.0302 대회, 총회와의 관계

d.교회의 사명과 관련해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대회에 제안하거나, ~~적어도 다른 한 노회로부터 동의를 받은~~ 헌의안을 총회에 제안하며, *제안된 헌의안에 동의하며,*

배경과 근거

어떤 노회가 상정하는 헌의안은 모두 최소 한 노회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은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최소 두 노회의 지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실제로 이 요건으로 인해 사업 제출 기한에 혼란이 발생하고, 최소 한 노회 이상의 동의를 얻으려는 노회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모든 헌의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의하는 노회가 하나 이상 생겨났다. 요컨대, 이 요구 사항은 명시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다.

또한, 우리는 정의와 신실함에 대한 부름이 종종 중앙에서 듣기 어려운 부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회와 사회의 변방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정치와 헌법을 통해 노력한다. 동의를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를 더욱 소외시키는 장벽을 만들 수 있다. 동의를 필요성을 없애는 동시에 폭넓은 지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관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총회의 업무에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자 한다.

헌법 자문 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 요청은 총회에 헌의안을 제안하는 것과 관련하여 총회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노회의 책임이 명시된 G-3.0302d항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총회에 헌의안을 제출할 때 최소 한 노회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2012년 헌법 개정안을 뒤집는 것이다(220회 총회록, 2012, 72-72, 241, 항목 04-01, 기록 3 참조). 격년 총회 검토위원회가 제안하고 그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2012년 총회에 관한 개정안은 "노회들

간의 협력을 개선하고, 그 앞에 놓인 사업이 교회의 사명(G-3.0302(d))와 교회와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대한 공통 관심사인지 확인하고, 교회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헌의안과 결의안이 잘 고려되도록 장려하는 것"이었다.

총회 진행 규정 상임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개정안의 근거는 동의 요건에 대해서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 요건으로 인해 사업 제출 기한에 혼란이 발생하고, 최소 한 노회 이상의 동의를 얻으려는 노회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모든 헌의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의하는 노회가 하나 이상 생겨났다. 요컨대, 이 요구 사항은 명시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다.... 동의 요건은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를 더욱 소외시키는 장벽을 만들 수 있다. 동의의 필요성을 없애는 동시에 폭넓은 지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관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총회의 업무에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자 다한.

헌법 개정은 "개혁되었고, 항상 개혁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로 진행되어야 한다. (G-6.01). 따라서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목회자와 중간 공의회 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개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개정 절차는 사라져야 한다. 개정안은 동의 요건을 삭제하지만, 여전히 동의자가 지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총회 절차에 대한 총회 위원회는 GAP-05을 36/0로 승인했고, 제 226회 총회(2024)는 GAP-05를 390/14로 승인했다.

GAP-05에 대한 기록 전체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search/3001247>을 참조하라.

24-J — G-3.0501

총회

G-3.0501 구성과 책임 (GAP-04)

제 226회 총회(2024)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G-3.0501 구성과 책임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까?

(삭제된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했고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총회는 전체 교회의 공의회로서 미국장로교의 대회, 노회, 당회, 개체교회의 일치를 보여준다. 총회는 노회에서 선출된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영역 내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F-1.0403 and G-3.0103). 이들은 다음의 비율에 따라 대의원으로 사역한다:

~~회원 8,000명 6000명 이하: 사역장로(장로) 1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1명~~
~~8,001-16,000 6001-12,000: 사역장로(장로) 2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2명~~
~~16,001-24,000 12,001-19,000 : 사역장로(장로) 3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3명~~
~~24,001-32,000 19,001 이상 : 사역장로(장로) 4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4명~~
~~32,001 40,000: 사역장로(장로) 5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5명~~
~~40,001 48,000: 사역장로(장로) 6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6명~~
~~48,001명 이상: 사역장로(장로) 7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7명~~

배경과 근거

규례서에 대의원 수를 결정하는 비율을 정하면 유연성을 허용하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변경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진다. 현재의 문구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가장 큰 두 범주에 해당하는 노회가 없고 더 많은 노회에는 치리 장로 1명과 가르치는 장로 1명만 할당되어 있다. 그러면 선출되는 위원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 총회의 업무를 위해 모이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헌법 자문 위원회(ACC)의 권고 사항

헌법 자문위원회는 제226회 총회 (2024)에서 안건 GAP-04의 원래 건의안을 승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원래의 건의안을 수정했다.

헌법자문위원회는 현행 총회 총대 수를 결정하는 제도가 노회 회원 수 감소와 노회 수 감소라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총회 절차 위원회는 원래의 건의안을 대폭 수정한 후 합의에 따라 항목 GAP-04를 승인했다.
제226회 총회(2024년)에서 항목 GAP-04을 400/12로 승인했다.

GAP-05에 대한 기록 전체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search/3001247>을 참조하라.

24-K — D-7.0501

조사

D-7.0501 조사 위원회로의 회부 (POL-02)

제 226회 총회(2024)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D-7.0501 조사위원회로의 회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합니까?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당회의 서기나 노회의 서기는 혐의 사항을 접수하면, 추가 조사 없이, 피고소인 명이나 위법 행위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다만 위법 행위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만을 공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혐의 사항 진술문을 조사 위원회에 즉시 회부해야 한다. 혐의 사항 진술문이 회부되면, 조사 위원회는 아래에 규정된 대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G-4.0302에 따라, 해당 서기는 미성년자 또는 정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신체적 학대, 방치 및/또는 성추행 또는 학대와 관련된 피해 또는 피해 위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민사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당회의 서기나 노회의 서기는 혐의제기자에게 징계 절차에 대해서 알리고, 이 절차에서의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

배경과 근거

편집자 주: 원래의 근거는 총회에서 대폭 수정된 언어에 대해 작성된 것이었다. 편집된 이 근거는 승인된 개정 제안에 해당하는 근거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D-7.0501의 문맥은 징계가 따를 수도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고발장이 제출되면, 교회 또는 노회 협의회가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단의* 징계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절차이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G-4.0302,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 따른 주요 도덕적 의무이다. 다음은 당국에 정보를 공개하여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명령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기본 도덕적 가치를 재확인한다. G-4.0302는 공개에 대한 실질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방치 및/또는 성추행과 성적 학대로 인한 위험 또는 위험의 가능성을 인식할 경우..." 인식하는 것은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데 필수적이다.

도덕적, 정치적 틀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의무이며, 이는 질서 징계 절차의 책 7장에 함축되어 있다. D-7.0201a.와 D-7.1501b.는 둘 다 "다른 사람에 대한 성적 학대 관련 합리적인 위험성을 인지했거나 합리적으로 인지했어야 하는 사람이 이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를 지적했다. 제 7장에서 보여지는 도덕적 약속은 우리가 위험을 인식할 책임이 있으며, 일단 위험을 알게 되면 해악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행동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자문 위원회(ACC)의 권고 사항

편집자 주: 헌법 자문위원회는 제226회 총회 (2024)에서 안건 POL-02의 원래 건의안을 승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원래의 건의안을 수정했다. 편집된 이 권고 사항은 승인된 개정 제안에 해당하는 권고 사항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규례서에는 성적 학대 혐의가 있는 경우의 직위해제 또는 기타 직무 제한(D-7.09), 성적 비행 및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 요건(G-3.0106)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목회적 돌봄 행사에 대한 기밀 유지 조항은 학대 혐의를 비밀로 유지 하기 위해서 기밀 유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향후 신체적 상해 또는 학대의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상황에서 교회와 민사 당국에 보고 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다.(G-4.0302).

총회 정책 위원회는 안건 POL-02을 37/0로 승인했다. 제226회 총회(2024년)는 안건 POL-02을 401/4로 승인했다.

POL-08에 대한 기록 전체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search/3001123> 참조하라.

24-L — D-7.0902b

성적 학대 관련 혐의 제기

D-7.0902b 직위 해제(POL-04)

제 226회 총회(2024)는 정서기가 다음의 개정안을 찬반 투표를 위해 노회에 보낼 것을 지시한다:

D-7.0902b.의 직위 해제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합니까?

(추가된 부분은 기울임꼴로 표시했다.)

D-3.0102에 따라 지명된 위원들은 혐의 사항 진술문을 검토하고 피혐의자에게 발언 기회를 준 후, 혐의의 성격과 잠재적 사실성에 비추어 판단할 때, 교회에 대한 위험성 또는 학대로 인한 잠재적 희생자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에 그 목사에 대한 *유급* 직위 해제 또는 기타 제재가 필요한 지 여부를 가능한 한 빨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유급* 직위 해제 또는 제재는 징계 절차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전권위원회 위원이 직위 해제 또는 제재를 변경하거나 제거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비용은 가능한 경우 고용 조직체가 부담하거나, 필요한 경우 노회가 부담한다.*

배경과 근거

이 개정안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말씀과 성례전의 모든 목사들의 적법한 절차의 권리를 보존할 것이며, 그러한 위법 행위의 혐의자나 잠재적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보호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2005년 7월 3일 직무 해제 허가가 처음 승인된 이래 2023년 7월 9일 교회 규례서가 채택될 때까지, 교단의 모든 목회자와 노회는 성추행 혐의가 접수될 때 단일하고 표준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은 노회에 직무 해제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장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휴직에 대한 급여를 요구했다.

D-7.0902에 있는 현재 언어의 부정확성과 모호함은 교단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절차를 제공하지 못한다. D-7.0902의 본문에는 직무 해제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교회 규례서의 D-10.0106 본문에서 "유급 직무 해제"가 눈에 띄게 누락되거나 삭제되고, D-7.0902에서 단순히 "직무 해제"로 대체된 것은 적어도 두 가지 그럴듯한 해석을 낳는다: 첫째, 모든 직무 해제가 무급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각 노회는 휴직이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한 자체 정책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확성과 모호함은 말씀과 성례전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헌법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I. 무급 직무 해제는 부적절하다. 만약 초안 작성자의 의도가 모든 직무 해제가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그 결과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서 중요한 적법 절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다.

A. 무급 직무해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 혐의가 접수된 후 조사위원회가 임명되기도 전에 무급 행정 휴가를 부과하는 것은 D-8.0201.c.c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완전히 모순되며 이를 훼손한다. 목사는 교회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노회는 목사회중이 동의하고 노회가 승인한 부름 조건에 명시된 보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즉시 박탈한다.

B. 낮아진 증거 기준D-7.0902b.의 현행 규정은 최종적인 유죄 판결에 필요한 것보다 명백히 낮은 증거 기준을 근거로 모든 보상을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D-7.0902.b.는 "혐의의 진실 가능성"에 근거하여 행정 휴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D-8.0902는 "모든 증거를 비교하고 고려한 결과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사실이 사실이라는 지속적인 확신을 강요할 때"에만 유죄 판결을 허용한다. 권징 조례(Rules of Discipline,) 어법에 의존한다면, 그러한 입증의 기준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개연성 있는 원인이었을 것이다. 교회 권징(Church Discipline)에 포함된 어법과 상관없이, D-7.0902.b.에서 요구하는 입증의 양은 D-8.0902에 비해 현저히 적다.

C. 재판 전 급여를 박탈하는 것은 징벌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에 부여한 권한, 즉 교회 권징의 행사를 통해 드러나는 권한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권한이지 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며,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지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D-1.01 (강조체 추가). 혐의가 접수된 후 수사나 재판 전에 며칠 이내에 모든 보상을 몰수하는 것은 유죄 판결 전에 처벌하는 것과 같으며 헌법상 목적에 위배된다.

헌법 자문 위원회의 권고 사항

헌법 자문위원회는 제226회 총회(2024년)에서 POL-04를 승인할 것을 권고한다.

섹션 D-7.0902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해서 성적 학대 혐의가 접수된 경우 직무 해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022년에 권징 조례가 업데이트되면서 D-10.0106를 교회 권징 D-7.0902으로 바뀌었다. 이전 D.10.0106에서는 직무 해제가 "유급"이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새로운 D-7.0902에서 '유급'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섹션 D-7.0902는 관리 휴가의 무급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침묵하고 있다. 단순히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다.

헌법 자문위원회는 직무 해제의 유급화 요건을 다시 삽입하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에 동의하며, '유급'이라는 단어가 누락된 것은 감독상의 실수라고 판단했다. 또한 POL-04는 "비용은 가능한 경우 고용 조직체가 부담하거나 필요에 따라 노회가 분담한다." 라는 명확한 문구를 첨가했다. 헌법 자문위원회는 이 명확한 문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총회 정치위원회는 안건 POL-04를 38/0 으로 승인했다. 제226회 총회(2024)는 안건 POL-04를 403/9로 승인했다.

POL-04에 대한 기록 전체를 보려면, <https://www.pc-biz.org/search/3001127> 참조하라.

24-M 교회 사역 공유에 관한 성공회와 미국장로교 간의 협약문

G-5.0203(ECU-05)에 따라 노회 투표에 부침

교회 사역 공유에 관한 성공회와 미국장로교 간의 협약문

향후 진행 방향

이 협약을 통해 두 교단은 "해당 교단에서 인정된 목회자들은 교구장 주교와 해당 노회가 요청하고 승인하면, 각 교단의 규제 하에 그리고 권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 교단의 교회에서 관련 직책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 협약에는 하나의 조건이 첨부되어 있다. "안수 사역자에 대한 조정이나 상호 교류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에, 이들 특별 사역 기회에 대한 모든 인준은 미국장로교 공동 예식서와 규례서, 성공회 공동 기도서와 헌법 및 정관을 따라야 한다."

또한 현재 양 교단은 "교구장 주교와 노회가 선교, 교육, 전례 생활을 함께 계획하고 논의하며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새로운 교회에 대한 개발과 재개발의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위의 권고사항(지침)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제시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두 교단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인 일치에 향한 한 걸음으로서 안수받은 사역의 상호 인정 문제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대화하기로 합의했다. 본 협약을 통해 2017년 6월에 성공회와 미국장로교는 공식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Churches Uniting in Christ 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안수 직제 사역을 서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 공개 선언은 선교적 파트너십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재 협약의 잠재적 장벽을 없애고 강조한다.

안수 직제 사역에 대한 통합과 아직은 불완전한 이해, 신앙과 사역에 대한 충분한 합의에 기초해, 본 교단들은 최근 수십년 간의 두 교단의 두드러진 동반 성장과 함께 두 교단의 현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할 것을 제안한다.

에큐메니칼 사역에 참여하기

우리는 세계 교회협의회 2013 *교회: 공통의 비전을 향해*에 동의한다. 직제 사역에 관해선 신약에서 단일 형태의 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는 안수 직제 사역에 대한 이해, 질서, 실행에 관해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성경에 주목한다. 때때로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셔서 그 상황의 필요에 따라 그 사역을 조정하도록 하셨다 (행 6:1-6 참조). 다양한 형태의 사역이 성령의 은사로 축복받았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같은 초기 저술가들은 주교, 장로, 집사라는 세 가지 직분을 주장했다. 이 세 가지 관련 사역 형식은 신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형식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규범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전, 교리, 전례 질서 등 교회의 사도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에서 안수 직제 사역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사역의 승계는 교회의 사도적 연속성을 위한 것이다⁶

성공회와 미국장로교는 모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표현한 세 가지 직분(주교, 장로, 집사)을 반영하고 있지만, 각 교단의 헌법은 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각 교단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두 교단 모두 넓은 에큐메니칼 의미에서 사도적 계승을 주장한다.⁷ 성공회와 미국장로교는 2017 Churches Uniting in Christ의 상호 인정 또는 직제 사역에서 표현한 것처럼, 감독(episkopé)의 은사, 즉 관리 사역을 각 교단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⁶ *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 (Faith and Order Paper No. 214) (Geneva: WCC, 2013), 26. 참고. Ignatius of Antioch's Letter to the Magnesians 6 and 13; Letter to the Trallians 7; Letter to the Philadelphians 4; Letter to the Smyrnaeans 8.

⁷ *미국장로교 규례서*(미국장로교: 필라델피아, 1789)를 볼 것. '주교'와 '목사'는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으며, 당회 의장으로서 목사는 노회의 회원들을 감독하고 장로와 집사의 안수를 집행한다. Cf "The Successor to Peter: A Paper for Discussion from the Presbyterian Church (U.S.A.)", Unilateral Discussion PC(USA) and Vatican. Louisville, Kentucky, December 6-7, 2000. 각주 5,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재결합한 1983년 전에 북장로교인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규례서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부르는 몇몇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교'이라는 직함이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반 필라델피아 노회 회의록의 명부를 보면 '다음 주교들이 참석했다.....' 라는 문구가 있다.

이는 곧 교회의 위임 목사는 회중으로 구성된 교구의 주교라는 의미다. 그 또는 그녀는 '장로'의 조력을 받고 '집사'의 도움을 받는다." 작은 규모의 교구로서 장로교는 이그나티우스가 표현한 역사적인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다.

특히, 성공회와 미국장로교 간의 에큐메니칼 대화는 2라운드와 이번 3라운드에서 교구장 주교와 노회 의장이 안수를 주재하고 목사를 임명하거나 목회적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하여 *감독(에피스코페)*의 유사한 교회적 권위와 은사의 표현이 있음을 인정한다.

세계교회협의회(CWC)의 1982년 기초 문서인 '세계, 성찬, 사역' 제6장 및 2013년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해(신앙과 직제 문서 214호)'에 기초해, 노회와 교구는 노회 의장과 교구장 주교를 서로의 사역 축하 행사에 초대하여 안수뿐만 아니라 임직식 및 기관에 참여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며, 주교와 의장은 에큐메니칼 축복을 나눈다. 또한 각 교단이 상호 사역을 인정하는 다른 교단(예: 미국 북음주의 루터교회, 미국 모라비안 교회 북남부 지방)의 주교도 장로 안수식에 포함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회 의장이 임명될 때 성공회 주교 또는 그 지명자가 참석하고, 성공회 주교가 봉헌될 때 장로교 의장 또는 그 지명자가 참석하며, 그 축하의 순간에 두 사람이 모두 초대되어 에큐메니칼 축복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제한된 직제사역 목회자 교환

현재 협약(2008-2009년) 내에서 성공회 주교와 미국장로교 노회의 재량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교단 간 안수 목사의 다음과 같은 교류에 대한 조항이 있다:

- 장로교가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 직분과 에큐메니칼 사역에서 성공회 장로(안수를 받고 *사제*로 불리는 사람)를 받아들이는 것;
- 성공회가 임면권을 가진 에큐메니칼 사역 및 협력 교구와 같은 성공회 임직에 장로교 장로(구체적으로 말씀, 성찬, 교육 사역에 안수 및 봉헌된 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교역 장로*)를 받아들이는 것.
- 이 협약은 미국장로교의 위임 사역장로 및 평신도 파송 목회자 (파송 사역장로라고도 함), 성공회 또는 미국장로교의 집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한된 직제사역 목회자 교환 지침

선교적 목적과 교구장 주교와 지역 노회 간의 협의에 따라, 미국장로교 목회자는 해당 교회 기구에 의해 인가(허가) 받아 다음의 지침에 따라 사역할 수 있다.

제한적인 직제사역 교환 절차는 청빙 조직의 관련 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역을 확인하고 해당 사역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는 목회자를 파송 조직에서 확인하면서 시작된다.

청빙 조직의 관련 기관은 교회 사역과 목회자 사이의 제한적 직제사역 교환 절차를 시작한다. 목회자가 교환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

청빙 기관은 해당 노회의 적절한 교회 기관과 협의하여 잠재적 사역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파송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목회자는 목회자 신분의 지속을 위해 파송 교회에 계속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성공회와 미국장로교는 모두 다른 전통에서 봉사하기 전에 자신의 전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년 이상이고 소속 교단 사역에서 활동 중인 노회원에게만 제한적으로 목사 교환 기회가 주어진다.

제한된 직제사역 교환 직책으로 근무하는 목회자는 본 협약에 따라 한시적이어야 한다. 목회자의 임기는 보통 2년에서 4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한 교회의 목회자가 다른 교회에서 영구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받는 교회의 규칙에 따라 목회자 지위 양도 또는 수락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징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목회자는 파송 단체의 관할권 하에 있지만 필요에 따라 청빙 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금 및 의료 보험은 교단에 가입한 교회를 통해 제공된다.

기능

목회자가 해당 교회 기관으로부터 인가 또는 위임을 받은 경우,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목회적 또는 행정적 책임을 행사할 수 있다;
- 교구장 주교 또는 노회의 지시에 따라 목회자로서 공적 예배를 인도한다;
- 복음을 전한다;
- 아래 명시된 지침에 따라 성찬을 거행하고 집례한다;
- 세례, 입교, 영세, 세례 서약 재확인을 위한 사람을 교육하며 교구장 주교 또는 노회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다;
- 교구 또는 노회의 전도 협력 사역을 지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교회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도록 인도한다.

목회자가 특정 사역과 교회 상황에서 섬길 때, 안수 사역자에 대한 조정이나 상호 교류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았기에, 본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들 특별 사역 기회에 대한 모든 인증은 미국장로교 공동 예식서와 헌법,

성공회 공동 기도서와 헌법 및 정관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명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교구장 주교가 성공회 예배 자료를 사용하도록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 장로교 목사는 미국장로교에서 승인하거나 추천한 예배 자료를 사용한다(성만찬 기도문은 제외);
- 노회가 장로교 예배 자료를 사용하도록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 성공회 사제는 성공회에서 승인하거나 추천한 예배 자료를 사용한다;
- 사제와 목사는 집례할 때 해당 교단 기도서와 교단 자료집의 성만찬 예식을 따라야 한다;
- "칭빙" 교회 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제와 장로는 두 교단이 완전한 교류 관계에 있는 미국 북음주의 루터교회의 공인 또는 추천 예배 자료와 성만찬 예식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 심사 및 감독

본 목회자의 제한적 직제사역 교환에 관한 계약의 조건에 따라 봉사하는 목사는 교구장 주교 또는 노회가 특정 사역 파송 또는 교회 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준비와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교회 기관의 자체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 신앙, 파송 사역에 대한 동기, 교구 또는 노회가 정한 지침 사항과 관련해, 관련 교회 기관은 목회자를 심사해야 한다.

본 계약 조건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목회자는 교구장 주교 또는 노회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한다. 충분히 타당한 근거에 기초해 노회는 언제라도 그 파송을 철회할 수 있다. 멘토 및 지역 감독관으로 목회자가 지정된다.

승인은 2년 이상 4년 이하의 기간으로 이루어진다. 위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절한 시간 내에 목회자는 교구장 주교 및 노회와 언약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이해 당사자(예: 교구장 주교 및 노회, 목회자, 특정 사역 또는 에큐메니칼 사역의 공인 대표)의 동의를 얻어 갱신할 수 있다.

인준을 받았으나 지정된 사역에서 봉사하는 것을 후에 중단한 목회자는 계속 봉사 가능한 것으로 등재될 수 있지만, 해당 교회 기관에 의해 그 사역이나 교회 환경에서 봉사하도록 위임이 갱신될 때까지 위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에큐메니칼 사역 기념

교구장 주교 또는 노회가 위에 설명된 봉사 사역을 수행하며 특정 사역 또는 에큐메니칼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노회원의 자격에 만족할 경우, 교구장 주교 또는 노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의 사항에 따라 교구장 주교 또는 노회가 지정한 대로 봉사하도록 목회자를 위임하고 임명한다:

교구와 노회 모두 예배에 초대된다.

청빙 교구장 주교 또는 노회 의장은 그러한 축하 행사에서 이 예배 서문을 읽어야 한다:

본 교구/노회의 교회 기관은 ___이 본 교회의 교리, 권징, 예배를 받아들이고 [성공회-장로교 협약]에 따라 본 교회를 온전히 섬기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감사 드린다. 우리는 본 교회가 성직/직제 사역의 은혜와 권위를 받았으며, 목회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이 필요한 바, ___에게 이를 부여하려고 한다.

위원회 인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___이 이미 받은 사역을 인정하며, 목회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성직/직제 사역의 은혜와 권위를 그 위임에 추가한다.

각 교회의 취임 또는 위임 예식 후에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목회자를 소개한다:

세례를 통해, ___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___은 ___교구의 ___주교/ ___노회에 의해 목회자로 안수 받았으며, 이제 교회의 의견을 통해 ___로 섬기도록 하나님께 부르받았다

성도들의 응답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우리의 공통된 소명을 기쁨으로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___로 봉사하라는, ___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한다__.

파송 주교 또는 노회 의장은 후보자에게 사제 또는 목사로서의 안수를 재확인하도록 요청한다.

청빙 주교 또는 노회 의장은 목회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공회/미국장로교에서 목사 안수 서약을 확인하고 지키며, 또 ___교구/ ___노회와의 언약 관계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교리와 권징과 예배를 존중할 것입니까? 그리고 귀하는 본 교회의 헌법/교리에 따라 주교와 노회, 그리고 이 언약 관계 동안 귀하와 귀하의 사역에 대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목사들의 교회적 권위에 순종하십니까?

답변

저는 기꺼이 위와 같이 존중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__우리 두 교단의 신앙적인 협약에 따라 일하도록 위임받기 위해 필요한 성공회/장로교회의 교리와 권징과 예배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임직식 또는 취임식 예배 중 적절한 시간에, 목사는 사람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주교, 노회 의장 및 다른 모든 사제와 장로들은 목사를 주변으로 선다. 주교와 노회 의장, 사제, 목사들이 후보 목사에게 손을 얹은 상태에서, 청빙하는 주교나 노회 의장이 다음⁸ 또는 이와 유사한 기도 중 하나를 큰 소리로 말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모든 영예와 존엄, 모든 진보와 안정의 원천이시니 저희를 도와주소서. 당신은 지혜의 선물과 질서 가운데 성장하는 인류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임명하여 백성을 이끌게 하셨을 때, 그들과 함께 봉사하고 그들의 임무를 도울 다른 사람들도 선택하셨으므로, 거룩한 의식으로 세워진 장로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이 생겨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정신을 70명의 동방박사에게 전수하여 그가 위대한 민족을 다스리도록 돕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권능을 충만하게 나누어 주셔서, 늘어나는 제사와 예배에 필요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사회적 필요를 돌볼 수 있는 장로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주의 사도들에게 믿음을 전하도록 주신 것과 같은 사랑의 보살핌으로 그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필요한 것은 많으니, 그와 같은 일꾼들을 저희에게도 보내 주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주님의 백성들을 예배하고 돌볼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보내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당신의 이 사역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의 권능을 성령을 통하여 더하여 주셔서 그가 진정한 종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그/그녀를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교, 목회자, 동료 노회원들과 함께 동역자로서 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집사, 동료 노회원, 목사들과 함께 신실하게 사역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한 분이신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살아 계시고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간구합니다.

아멘.

혹은

⁸ Prayers adapted from Catholic Church, International Committee on English in the Liturgy, *Ceremonial of Bishops: Revised by Decree of the Second Vatican Ecumenical Council and Published by Authority of Pope John Paul II* (Revised), "Rite of Ordination of Presbyter". Liturgical Press, 1989.

모든 거룩함의 근원이시며, 언제나 은혜로우시며,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복된 성령의 선물을 이 주의 종들에게 부어 주소서. 고귀하고 모범적인 삶으로 그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제시한 장로들의 규범에 충실한 백성의 목회자임을 증명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주야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여 읽은 것을 믿고, 믿은 것을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정의, 불변, 자비, 용기 및 기타 모든 미덕이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에 반영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훈계를 통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소명의 선물을 순수하고 흠 없이 간직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성찬의 신비를 기뻐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자선을 끊임없이 베풀고, 신앙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부활의 날에 선한 양심과 참된 믿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가지고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당신과 성령과 함께 살아 계시고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 후에 다음과 유사한 말을 선포한다:

_____, 귀하는 _____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취임/위임받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실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취임식 또는 위임식 후에, 성공회에서는 주교가, 미국장로교에서는 권한을 부여받은 목사가 성만찬을 인도한다.

근거

참석자

성공회 대표: 유진 테일러 서튼 목사(공동 의장), 캐논 엘리스 존스톤 목사(공동 부의장), 마이클 부커 박사, 엘리자베스 링, 조셉 워니악 목사, 리처드 맘마나, 마가렛 로즈 목사.

미국장로교 대표: 앤 본드 장로(공동 의장), 닐 프레사 목사(공동 부의장), 테리 오포리 목사, 크리스천 보이드 목사, 로버트 폴츠-모리슨 목사, 브룩 피크렐 목사, 브라이언 엔츠 목사, 다이애나 라이트 장로.

서문: 시대의 긴급성

이와 같은 때에

에스더서는 힘든 도전의 시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시대는 아직까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비롯해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 기독교 교회는 재창조와 재정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0년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문하게 했다.

개별 교회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과거와 교회의 오래된 방식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놓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핵심 의무에 집중했다. 이로 인해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생겼다.

글로벌 팬데믹과 인종 갈등

우리 시대는 특히 단결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국장로교와 성공회 모두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인종 차별과 백인 우월주의의 죄가 과거 역사에서도 또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두 단체는 이에 대한 공모를 인정하고, 모든 인종 차별을 종식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개하며 섬기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분열에 대해 침묵할 수 없으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마 12.25). 개혁은 항상 주변부에서 시작된다.

광야에서 외치는 예언자의 목소리에서, 또 도시의 거리에서 흑인 살해에 반대하는 운동과 더불어 다른 유색인종의 죽음에 항의하는 활동가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두 교단이 그 사명의 일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현재와 과거의 시급성 때문이다. 그 시급성이 이 협약에 담겨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교회의 일치의 기초가 되며,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하는 사명의 기초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중 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21) 이 문서는 미국 성공회와 미국장로교가 수십 년 동안 나눈

대화의 정점이다¹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를 받아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교회 기관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교회의 장벽 허물기

낮은 벽으로 인해 두 교단은 사명과 사역을 함께 하지 못하였으며, 이 주목할 만한 변화의 시기에 성공회와 미국장로교 간의 양자 대화 참가자들은 2021년 총회와 2022년 총회에서 통과될 사역의 공유에 관한 제한적 교환 협약을 우리 교단이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함께 일하는 것을 막는 낮은 벽은 세상과 교회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허물어졌다. 2008 성공회-미국장로교 협약에 따라, 미국 북음주의 루터교회, 모라비안 교회(북부와 남부 지방)와 완전 교류하고 있는 두 교단, 즉 Churches Uniting in Christ를 통해 교류를 이룬 두 교단은 공적 증거와 수많은 지역 협력 사역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치를 향해 함께 선교하고 사역하는 통로가 된다.

따라서 장로교/성공회의 대화는 각자의 승인 기관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고려할 것, 향후 심의를 통해 대화를 지속할 것, 양측의 지도자가 이러한 노력에 공개적으로 헌신하고 지금까지의 진전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공개적으로 축하하는 행사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시편 133:1 오, 친족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즐거운지요! (성 헬레나 시편)

서론²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하도록 부름받았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창조물이다. 교회는 자력으로 또 자신을 위해 존재할 수 없다.'³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사명으로, 교회는 다양한 상호 보완적인 과업에 직면하게 된다. 창조와 구속의 모든 축복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기쁨 의무에 이끌린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알림으로써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어디서든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한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는'(엡 1:10)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교회는 모든 사람의 화해와 친교를 말씀하신대로 구현하도록 부름받았다.

¹ 성공회와 미국장로교는 19세기부터 에큐메니칼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² Adapted from *For the Sake of the Gospel: Mutual Recognition of Ordained Ministries in the Anglican and Uniting Churches in Australia*, 2001.

³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hurch*, Faith and Order Paper No. 181 (Geneva: WCC, 1998), §9.

교회는 지난 세기의 위대한 에큐메니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준에서 계속되는 분열로 인해 교회의 사명이 모든 면에서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교회가 너무 분열되어 하나의 사도적 신앙 안에서 공동의 세례를 인정하고 하나의 성찬상에 모일 수 없는데, 어떻게 인류의 일치성을 설득력있게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교회에서 분열을 제도화했고, 분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자 신앙의 장벽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분열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과 상충되며 그분의 선물인 일치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교회의 증거,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섬김은 교회 간의 역사적 분열을 극복함으로써 크게 강화될 것이다⁴. 우리 두 교회, 성공회와 미국장로교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도전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 교회가 고려하고 있는 다른 유사한 조치들과 함께 볼 때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농촌과 도시의 많은 지역에는 안수받은 사역을 공유함으로써 큰 혜택을 받은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다. 선교적으로는 두 교회가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공동으로 개척하고, *에큐메니칼 교회*라고 불리는 연합 교회의 파트너로 확장할 수 있다⁵. 하나님 백성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먹이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와 선교 사역을 위해 우리의 언약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덜 시급하거나 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 협약문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순종,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가 부름받은 바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공식화되었다. 일치성은 하느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사회경제적 삶의 패턴의 변화는 두 교회 간의 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를 분열시키는 장벽이 교회를 분열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보여줄 때 복음이 선포된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교회의 사명인 선교에 함께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현재의 에큐메니칼 협정을 확인함

두 교단은 2008년의 현재 성공회-미국장로교 협정을 확인한다.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우리는 서로의 교회를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에 속한 교회로 인정한다;
-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전파되고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이 정식으로 집행됨을 인정한다;

⁴ See The Book of Common Prayer p 855: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to restore all people to unity with God and each other in Christ."

⁵ See *Together Towards Life: Mission and Evangelism in Changing Landscapes*. Edited by Jooseop Keum (Geneva: WCC, 2013).

- 우리는 서로의 안수받은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로 인정하며, 교회의 화해를 통해 사역자들의 완전한 상호 교환이 가능해질 때를 고대한다;
- 우리는 사도적 삶, 선교, 사역에서 교회의 일치와 연속성의 가치적 표징으로서 개인적 및 공동체적 감독(주교직)이 주교적 및 비주교적 다양한 형태로 교회에서 구체화되고 행사됨을 인정한다.
- 우리는 성공회가 미국장로교 회원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교회에서 성찬식을 받도록 하고, 미국장로교는 성공회 회원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교회에서 성찬식을 받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교회 구성원들이 이 성만찬의 환대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서로의 일치를 표현할 것을 권장한다.

요컨대, 우리는 언약 공동체를 위해 말씀과 성찬, 직제사역, 감독 사역의 구체화 및 행사(공동체적, 공동적, 개인적으로)를 제공하는 서로의 교회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그러나 동등하게 유효한 교회 정치의 차이로 인해 기존 교회 전통과 관습은 현재로서는 안수 받은 목사의 상호 교환, 즉 완전한 친교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은 두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해 왔다고 믿는다.

장로교 용어집

***감독(episkopé)의 사도적 기능** -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교회 사역을 감독하는 이들의 사도적 기능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활용했던 기능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도적 계승** - 초대 교회, 특히 예수의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연속성. 개혁교회와 로마 가톨릭은 사도적 계승이 있다고 믿지만, 그 계승의 위치는 서로 다르다.

***사도 시대** -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의 사도들이 생존해 있던 시기.

미국장로교 공동 예식서(Book of Common Worship) - 미국장로교의 예배 자료로, 헌법 제2권인 *규례서*의 *예배 지침*에 따라 다양한 예식과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 예식서 최신판은 2018년에 발행되었다.

***보편성** - 예루살렘의 키릴로스가 그의 세례 교리서에 설명한 내용으로, 단순한 지리적인 연결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의 다양성, 그리고 그 지역 교회들을 한 공동체로 연합시키는 믿음과 삶의 온전함의 참여를 의미한다..

교회(Church) -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넘어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상황에

따라 성공회, 미국장로교와 같이 교회적 연합체나 교단을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교회들(Churches) -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들, 세계 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개혁신교회 협의회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과 같은 교회적 연합체나 교단의 협력체.

교회(church; 소문자 "c") - 지역 교회, 교구와 같이 교회적 연합체나 교단의 지역적 표현.

평신도 목회자 (파송 사역장로라고도 함) - 노회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노회가 지정한 제한된 목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역 장로.

평신도 목회자 (파송 사역장로)는 주법이 허용하는 경우, 노회로부터 권한을 받아 당회를 인도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결혼을 주례할 수 있다.

위임 - 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교회의 공의회가 특정 사역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도록 한 개인(일반적으로 직제 사역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축복하며 위임하는 행위.

***성찬식** - 성만찬 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교제. 모든 교회가 서로 하나되어 친교를 나누는 목표, 즉 그리스도가 기도한 바와 같이 한 교회가 되는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했기에, 우리는 각각의 성만찬 단에 모여 각기 다른 성만찬, 그리스도와의 불완전한 연합을 이룬다.

미국장로교 헌법 - 미국장로교의 교회 생활을 규정하는 운영 문서. 헌법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신앙고백서'로 장로교인이 믿는 바를 12개의 신조, 요리문답, 신앙고백문, 신앙 선언문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제2권은 '규례서'로 장로교인이 운영, 교회 권징, 예배의 원칙과 관련하여 고백한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다.

공의회 - 교회의 영적 복지를 위한 분별력과 의사 결정을 위해 정식으로 구성된 사역 장로와 목사의 모임. 교단의 공의회에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다. 각 공의회는 독립적이나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한 공의회는 전체를 대표하는 조치, 또 교회 상위 부분과 조율하며 해당 공의회를 통해 진행하는 전체 교회의 조치, 즉 하위 부문을 운영하는 대표성을 의미한다. 당회는 지역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목사와 사역 장로로 구성된다. 노회, 대회, 총회는 동일한 수의 목사와 사역 장로로 구성된다. (*규례서*, F- 3.0203에서 발췌)

언약 동반자 - 참여하는 각 교회가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하는 진지한 헌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교회와 교회의 관계다. 언약의 동반자는 서로 간의 기존 차이점과 유사점을 인식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으며, 때로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함께 걷고 협력하는 헌신을 요구할 것이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가능성 뿐만 아니라 상호 도전과 변화의 확실성을 포함하며, 이러한 약속으로 인해 결국에는 현재에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각자의 조직이 달라질 것이다. 동반자 관계의 교회들은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이 새로운 관계에 헌신하며, 우리를 더 큰 가시적 연합으로 부르시는 분이 신실하시고 신뢰받을 만한 분이심을 전적으로 확신한다. (*미국장로교 모라비안 교회와의 언약 협약*, 9페이지)

***디아코니아** - 섬김의 사역. 많은 교회에서 집사를 안수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집사가 교회의 임원이지만 안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교회학** -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신학.

***에큐메니칼** - 교회의 일치에 관심을 갖는 에큐메니칼의 성격.

***주교직** - 교회와 그 사역을 감독하는 직책. 모든 교회는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를 복음에 충실하게 유지하고, 교회의 일치를 도모하며, 사역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사역을 감독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번 대화에서는 에큐메니칼의 핵심 이슈인 주교직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주교직의 의미는 각 공동체마다 다소 다르다.

***감독(에피스코페)** - "감독"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영어 단어 "주교"가 유래되었으며, 주교 또는 주교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에큐메니칼 대화에서 에피스코페라는 단어는 감독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감독 사역을 지칭하는 표준 용어가 되었다. 이러한 에피스코페의 사용은 또한 주교 직분을 유지하지 않는 교회들이 주교 직분의 사역이 교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초대하는 방법이 되었다.

노회 총무(Executive Presbyter/General Presbyter) - 해당 노회 내 교회, 검증된 사역, 목사 및 사역 장로들의 선교와 사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회의 결정에 따라 목회적 돌봄과 지도, 행정 기능 및 기타 직무를 제공하기 위해 노회가 고용하고 청빙한 최고 행정 직원이다.

***성만찬** - 성만찬이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뜻으로, 성만찬은 감사의 식사다. 성만찬은 빵과 잔의 잔치에 모인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서 보편적인 교회와 친교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성찬식, 거룩한 식탁이라고도 한다.

완전한 친교 - 다음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 간의 관계다: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교회로 인정;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삶과 신앙에 부적절하다고 상대방에게 했던 역사적 정죄를 철회; 서로의 세례를 계속 인정하고 회원들 간에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을 승인하고 장려; 서로의 다양한 사역을 인정하고 안수받은 말씀과 성례전 목사들이 상대 교단에서 사역하게 함; 교회의 기존 구조 안에서 적절한 협의와 의사 결정의 통로를 마련함; 신앙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전도, 증언, 봉사에서 공통의 표현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학적 대화 과정에 헌신함; 상호 긍정과 훈계의 원칙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성장할 수 있는 신뢰 관계의 기초가 되는 방식으로 복음 아래 함께 살 것을 서약함.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장로교, 미국 개혁교회,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공동의 소명"에 기초하여 완전한 친교를 맺는 것에 관한 합의문, 1 페이지)*

성직 - 직제 사역이라고도 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성과 남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교회 공의회에서 확정된 안수받은 직분을 말한다. 이러한 직분에는 주교/사제, 목사, 장로, 집사가 포함된다.

상호 교환성 - 각 교회 기관(교구장 주교 또는 노회)의 정식 승인과 위임을 받은 두 교단 간의 안수받은 목사의 상호 인정 및 상호 교환.

위임 - 교회 공의회가 특정 사역에 안수자를 공식적으로 배치하는 전례 예배다. 위임받은 사역자는 구체적인 책임과 임무를 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코이노니아 - 공동체, 친교 또는 교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다.

*합법적 다양성 - 합법적 다양성은 정당한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다양성을 의미한다. 교회마다 생각하는 합법적인 다양성의 범위가 다르다. "교회의 일치: 은사와 소명-캔버라 선언문"(1991년 세계교회협의회)은 "다양성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의 고백, 성경이 선포하고 사도 공동체가 설교한 구원과 인류의 최종 운명(히 13:8)을 불가능하게 만들 때 불법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장 -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유래한 교회의 여러 공의회는 헌법상 직책으로, 공의회에서 교회의 일치를 대표한다. 의장의 직분은 해당 공의회를 진행을 주재하고, 공의회가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도록 인도하며, 그러한 심의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고전 14:40). 당회 의장은 일반적으로 개별 교회의 담임목사 또는 노회가 승인한 위임 목사 또는 노회가 승인한 다른 목회자가 맡는다. 노회, 대회, 총회의 의장은 해당 공의회에서 선출한다. 총회의 총회장/공동총회장은 "교회의 삶에서 일치, 공동체, 선교의 유대의 표징"을 나타내는 총회의 대사다(총회 조직도, IV.A.2, 6-7쪽).

직제 사역 - 특정 여성과 남성이 특정 직책의 특정 기능에 특별히 부름받은,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역을 통해 행사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권위다. 신약성경은 두 가지 주요 직분과 그 직분에 따른 사역을 설명한다. 집사 직분은 디아코니아(섬김) 사역을, 장로 직분은 말씀과 성례전 사역(목사의 경우)과 공동체 관리 사역(사역 장로의 경우)을 맡는다.

안수 후보자 - 말씀과 성례전 사역에 대해 탐색 중이거나 안수 후보자이며 당회와 노회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개인이다.

*장로교 - 장로교는 교회의 운영권이 장로(그리스어로 프레비테로스)에게 있는 교회 조직의 한 형태를 말한다. 대문자 P가 붙은 장로교는 장로교 체제를 갖고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따르는 특정 교회의 이름이다.

노회 - 장로교 정치의 처리회로서 지정된 지역의 지역 교회 당회에서 위임한 동일한 수의 목사(말씀과 성례전 목사)와 사역 장로로 구성된다.

*인정 - "더 완전한 친교를 향한 대화 과정에서 다른 교회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교회로 받아들인다." (Timothy T. N. Lim, Ecclesial Recognition with Hegelian Philosophy, Social Psychology, and Continental Political Theory [Boston: Brill, 2017], 5.)

개혁주의 - 개신교 신학 전통으로 "예를 들어 칼빈과 불링거와 같은 16세기의 고전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그 전통에 대한 고백과 연속선상에 있다"(Jane Dempsey Douglass, "What is Reformed Theology?" Th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11, no. 1 (1990): 4.)

사역 장로 - 지역 교회에서 선출되고 해당 교회의 당회에서 안수 및 임명되어 교회의 당회 및 공의회에서 목사와 함께 영적 리더십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지역 교회의 정회원이다.

성례전 -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신다. 또한 이는 인간의 감사의 행위로서,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섬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성례전은 물리적 표징이자 영적 은사인데, 교회의 공동 예배 속에서 말씀과 행위, 기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일상적인 것들, 곧 물, 빵, 포도주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사용한다. 개혁 전통은 세례와 주의 만찬-성체 또는 성찬이라고도 함-의 성례전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보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켜오셨음을 인정한다."(규례서, W-3.0401)

당회 - 장로교 제체로 지역 교회의 목회자 및 사역 장로로 구성된 교회 공의회다.

정서기/당회서기- 미국장로교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하는 여러 공의회(당회의 경우 당회 서기라고 함)의 헌법적 직분으로, 해당 공의회의 의장과 함께 그 공의회의 조치를 해석하며 해당 공의회의 심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총회 정서기는 교단의 수장으로 이해되며, 총회장/공동총회장과 함께 교회의 일치를 대표한다. 총회 정서기는 미국장로교의 최고 에큐메니칼 책임자이며 미국장로교의 6개 교회 기관 중 하나인 총회 사무국의 최고 경영자다.

대회 - "그 지역 전반에 걸쳐 교회의 집합적인 표현을 하는 중간급 공의회이다. 대회는 특정 지리적 영역 내의 세 개 이상의 노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규례서, W-3.0401)

목사(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도 함) - 장로교 체제에서 안수받은 직분으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집례하고 사역의 맥락에서 교회 생활의 건강을 돌보는 사역을 통해 교회 공의회 안팎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세계 개혁신교회 협의회(WCRC) - 개혁신교회, 장로교회, 연합교회, 통합교회, 회중교회, 율든교회의 신학 전통에 속한 1억 명의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110개국 233개 회원 교회로 구성된 세계개혁신교회연맹과 개혁신에큐메니칼협의회가 합병하여 2010년에 설립된 글로벌 협의체이다. WCRC 사무국의 본부는 독일 하노버에 있으며, 7년마다 열리는 총회에 의해 운영되며 총회 사이에는 집행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세계 교회 협의회(WCC) -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110개국 350개 회원교단으로 구성되어 1948년 설립된 글로벌 협의체이다. 성공회와 미국장로교는 WCC의 창립 회원이다. WCC 사무국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7년마다 열리는 총회에 의해 운영되며 총회 사이에는 중앙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The One Body Of Christ: Ministry In Service To The Church and The World, Roman Catholic – Reformed Dialogue of the United States, Round Eight: 2012- 2017. pp. 4-5의 "용어편"에서 발췌함*

성공회 용어집***

+**영국 국교회(Anglican Communion)**- 전 세계 캔터베리 교구와 친교를 맺고 있는 교회다. 회원 교회는 독립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지만 성공회의 정체성과 성경, 전통, 이성에 대한 헌신에 관한 공통의 유산을 권위의 원천으로 공유한다. 성공회(Episcopal Church)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영국 국교회(Anglican Communion)를 구체화한 교회이다.

+**영국 국교회주의** - 이 생활 방식은 캔터베리 교구(영국과 궁극적으로 모든 성공회의 교회 중심이 되는 주교/교구)와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리 체계와 운영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이 용어는 다양한 형태로 영국 제도, 특히 잉글랜드를 지칭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부주교** - 교구장 주교가 위임한 정해진 행정 권한을 가진 성직자다.

#**주교** - 교회의 세 가지 안수 목사 직분 중 하나인 주교는 교회를 이끌고 감독하며 연합하는 사도적 사역을 담당한다. 이들은 초대 교회의 사역과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 사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역사적인 계승에 서 있다. 주교는 교회의 수석 목회자로서 감독 및 관리 사역을 수행한다. 이들은 종신 주교로 봉헌된다. 주교의 사역은 감독하는 사역이므로 주교 관련된 사안에는 '감독'(그리스어 '감독자'를 뜻하는 에피스코포스에서 유래)이라는 용어가 적용된다. '감독(episcopal)' 교회는 주교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이며, '감독' 예배는 주교가 이끄는 예배다.

****주교 - 보좌** - 교구 직원의 정규직으로, 일반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임명되며 교구의 주교 사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교다.

****주교 - 지원** - 일반적으로 임시로 추가적인 주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구를 보좌하는 주교를 말한다. 교구장 주교가 임명하며, 주교가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주교 부주교** - 선출된 주교로, 교구장 주교 사임 시 승계권을 가지며 교구장 주교와 함께 봉사한다.

****주교, 교구장** - 교구의 주교라고도 한다. 교구장 주교는 참정권자, 보조 주교 또는 부주교와는 구별된다. 이 용어는 분명히 '일반 관할권'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할권으로 감독 직책에 "영구적으로 그리고 제거할 수 없게 부속"된다. 헌법에 따라 감독은

주교회의의 동의 없이 관할권을 사임할 수 없다. 감독은 만 72세가 되면 모든 관할권에서 사임해야 한다.

****주교, 주임** - 성공회 교회의 주임 목사 겸 대주교.

****임시 주교** - 교구장 주교가 (승계권을 가진) 주교 보좌자 없이 사임하는 경우, 교구는 새 교구장 주교가 봉헌될 때까지 최대 3년의 임시 기간 동안 전권을 가진 임시 주교를 불러 주교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속교구 주교** - 교구장 주교를 자동으로 승계하지 않는 주교다. 교구장 주교의 지시에 따라 교구에서 선출하여 무기한으로 봉사한다.

+ **공동 기도서** - 성공회의 공식 예배서다. 공동 기도서는 성공회의 모든 회원과 수도회가 공동 예배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례 양식, 기도문, 지침을 제공한다. 성공회 전례는 1549년 최초의 영어 기도서가 출판된 이래로 기도서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공회를 위한 **공동 기도서**의 현재 판본이자 결정판은 1979년에 비준되었다.

****예식서** - 전례 및 음악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한 선택적 예식 및 본문으로 구성된 책이다.

****캐논** - 이 단어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1) 정경
- 2) 교회법
- 3) 교회 직함으로서 캐논은 성당, 교구 또는 기타 기관의 성직자 또는 평신도의 일원일 수 있다
- 4) 전례에서는 추수감사절의 고정 부분

****일반 성직자** - 교구장 주교를 보좌하는 성직자 또는 평신도다.

****관할권 거주** - 교구의 교회 기관 관할 하에 근무하는 성직자는 해당 교구에 정식으로 거주한다. 성직자는 정식 절차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관할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교회 -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 교회. 문맥에 따라 성공회, 미국장로교와 같이 교회 공동체/교단을 통칭할 수도 있다.

교회들(Churches) -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들, 세계 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리스도 교회 연합 (Churches Uniting in Christ)과 같은 교회적 연합체나 교단의 협력체.

교회(소문자 "c") - 교회 공동체/교단의 지역적 표현(예: 회중, 교구).

그리스도 교회 연합(Churches Uniting in Christ) - 11개의 기독교 공동체, 즉 미국의 주류 교단(주로 백인과 주로 흑인 모두 포함) 간의 언약 관계로,

2002년 1월 20일 테네시주 멤피스의 로레인 모텔 발코니에서 시작되었다. Consultation on Church Union⁹의 후속 조직이다.

****사역위원회(COM)** - 교리서 제3장 제1조에 따라 각 교구는 교구 내 현재와 미래의 사목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교를 돕기 위해 COM을 설치해야 한다.

교회 연합에 관한 협의(COCU) - 1962년에 시작된 미국의 교회 연합을 위한 여러 교회 단체의 노력으로, 2002년에 Churches Uniting in Christ(CUIC)이 되었다.

성공회 헌법 및 정관 - 헌법 및 정관은 성공회 기구 (총회: 주교회의 및 대의원회)의 공식적인 통치 규칙이다. 성공회 공동 기도서는 성공회 헌법 및 정관의 일부이다.

****목사보** - 일반적으로 본당의 보조 사제를 지칭하는 용어다.

****치료** - 성직자의 목회적, 지리적 책임 및 책임.

****집사** - 성공회에서 사제, 주교와 함께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직분 중 하나다. 집사의 소명은 특히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를 섬기고 세상의 필요와 희망을 교회에 해석하는 데 있다. 집사 직분의 표식은 왼쪽 어깨에 걸치고 오른팔 아래에 고정하는 스톨이다. 성찬식에서 집사들은 복음을 읽고, 성도의 기도를 인도하고, 고해성사를 소개하고, 제단을 준비하고, 빵과 포도주의 분배를 돕고, 성찬을 집전하고, 사람들을 해산한다.

****교구** - 성공회 교회의 주요 조직 단위 역할을 하는 지리적 영역이다. 주교와 입법 기관인 대회 또는 공의회가 각 교구를 감독한다.

****교구 대회** - 교구 위원회 위원과 총회 대의원을 선출하고, 교구 정책을 결정하며, 기타 교구 사업(예: 예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때때로 교구의 주교를 선출하기 위해 교구 교회에서 평신도 및 성직자 대표들이 모이는 연례 회의다.

****교구 전환 사역자** - 교구 직원의 성직자 또는 평신도로서 주교를 돕고 전환기에 있는 공동체와 개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회 단체 - 신념과 전통을 준수하는 데 있어 통일된 신도들이 모인 종교적 친목 단체다.

****교회 당국** - 교회 기관의 책임 있는 개인 또는 단체다. 교구에서 이 권한은 교구장 주교에게 있다. 주교직이 공석이거나 주교가 무능력한 경우, 그 책임은 상임위원회 또는 다른 주교에게 있다

⁹ https://en.wikipedia.org/wiki/Churches_Uniting_in_Christ

성공회 - 미국 및 17개국의 111개 교구 또는 소집으로 구성된 기독교 교회 단체다. 성공회는 전 세계 영국 국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성공회 센터** - 감리교 주교와 그 직원, 기타 교회 관련 사무실이 있는 성공회의 교회 전체 사역 사무소다. 뉴욕에 위치해 있다.

**** 성공회 집행위원회** - 총회에서 채택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관리하는 전국 기구다.

에큐메니칼 교회 - 최소 두 개 이상의 교단으로 이루어진 교회이다.

성공회/주교(Episcopal/episcopal) - 성공회(Episcopal)는 성공회 소속을 의미하며, 주교(episcopal)는 '감독자'를 뜻하는 그리스어 *에피스코포스*에서 유래한 말로 주교를 지칭하는 용어다. '주교(episcopal)' 교회는 주교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이며, '주교' 예배는 주교가 이끄는 예배다.

2008년 성공회-장로교 협약 - 성공회와 미국장로교 간의 협정은 **제218회 총회(2008)에서 승인되었으며 2009년 노회들이 비준했다.** 성공회 제76회 총회는 2009년에 이 협약을 승인했다. 두 교회는 신학적, 선교적 문제를 계속 다루기 위해 또 한 차례의 대화를 승인했다.

****총회** - 성공회의 전국 단위 입법 기관이다. 이는 주교회의와 대의원회(각 교구에서 평신도 4명과 성직자 4명으로 구성)로 구성된다.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된다.

****주교회의** - 총회의 양원제 입법부의 일부다. 모든 교구장, 참주교, 부주교, 보좌관, 대부분의 사임 및 은퇴한 주교가 이 위원회의 회원이며, 총회 사이에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1982년 찬송집** - 성공회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찬송가 텍스트, 곡, 예배 음악 모음집이다. 또한 널리 사용되는 찬송집: *Lift Every Voice and Sing II (LEVAS)*와 *Wonder, Love and Praise*.

기관 - 새 사목 축하 예배에서 주교가 본당 담당 사제의 책임을 부여하는 기관 서한을 공유한다.

****전환 사역 사무소** - 성공회 및 기타 성공회 성직자와 평신도 전문가, 성공회의 예배 공동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교회 차원의 사무소다. OTM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서로의 은사, 기술 및 경험을 사용하여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배 공동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써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목사** (성공회 교회에서 사용) - 성직자를 지칭하는 용어다. 이는 사제 역할의 한 측면인 사목 사역, 즉 병든 자, 슬퍼하는 자, 궁핍한 자, 고통 받는 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 책임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주교에게 적합한 단어인데,

주교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도록' 성임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ELCA에서처럼 본당을 담당하는 성직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평신도는 성직자의 사목 역할을 분담하며, 점점 더 많은 본당에 평신도 사목팀이 있다.

+사제 또는 장로 - "장로"를 뜻하는 그리스어 프레비테로스에서 유래했다. 신약에서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한다. 영어 단어 '프리스트'는 '장로'에서 파생된 단어로, 장로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종교개혁 이후 일부 교회에서는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에 대해 '장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성공회에서는 이 직분에 대해 '사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1979년 BCP와 성공회에서는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제 안수 지침에는 "최소 두 명의 목회자가 참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리문답은 "사제 또는 목사의 사역"에 대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표하고, 특히 백성의 목사로서 교회를 감독하며, 주교와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죄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제, 관련 용어:**

담당 사제 - 교구마다 관행이 매우 다양하다. 교구목사가 없는 본당에서는 일반적으로 담당 사제가 주교와 협의하여 교구 목사의 많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직회와 논의를 한다.

교구 목사 - 주교와 협의하여 교구장단이 선출하며 교구의 영적 삶과 선교에 관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한다. 전례, 음악, 교육, 봉사 활동, 사목 돌봄을 담당하는 교구 목사는 본당 재산을 전적으로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평신도와 사무 직원을 고용 및 감독하며, 일반적으로 모든 제직회와 본당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부제 - 선교회의 책임 사제에게 적용되는 직책으로, 주교의 명을 받아 주교를 대신하여 일한다.

****대주교** - 성공회 관구에서 수석 주교를 대주교라고 한다. 이 용어는 교회 용어로는 다른 주교들 사이에서 첫 번째 또는 주재하는 지위를 의미하는 우선권과 관련이 있다.

****관구**

1) 성공회의 자율적인 전국 단위 교회의 내부 부서다. 성공회에는 해외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9개 관구가 있다.

2) 영국 국교회의 자율적인 전국 단위 교회의 내부 부서다.

성찬 - 1979년 교리문답에서 발췌: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확실하고 명확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성공회에는 두 가지 큰 성례전이 있다: 성세례와 성체성사. 성사 예식에는 견진, 안수, 성혼, 참회자의 화해, 영성체 등 다섯 가지가 있다.

**** 상임위원회** - 교구의 교회적 권위를 특정 영역(예: 성직자 징계, 본당의 재산, 안수)에서 주교와 공유하는 기구다. 주교가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가 유일한 교회 권위가 되기도 한다. 그 구성원은 교구 대회에서 선출된다. 또한 주교의 자문 위원회 역할도 한다.

+교구회(Vestry) - 교구회는 성공회 본당의 법인 재산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법적 대표자다. 교구회 회원 수와 임기는 교구마다 다르다. 교구회 회원은 일반적으로 연례 교구 회의에서 선출된다. 의장단의 주재자는 교구 목사가 된다.

+교구장 - 교구의 임원이다. 일반적으로 두 명의 교구장이 선정되어 교구회 멤버와 함께 봉사한다. 교구장은 일반적으로 "시니어"와 "주니어" 등급으로 나눈다. 선임 교구장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선출된 평신도 지도자로서 본당과 교구장 사이의 주요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한다. 주니어 교구장에게는 교구 건물과 부지의 유지 관리 책임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Glossary definitions used or adapted from "An Episcopal Dictionary of the Church, A User Friendly Reference for Episcopalians," Church Publishing, New York, 2000, Don S. Armentrout and Robert Boak Slocum, editors.

****Glossary definitions used or adapted from the Episcopal Glossary of "Principles for the Orderly Exchange of Clergy between the Episcopal Church and the Moravian Church in America, Northern and Southern Provinces" from 2009/2010.**

총회 에큐메니칼 및 종교 간 파트너십 위원회는 45대 0으로 안건 ECU-05를 승인했고, 제226회 총회(2024)는 안건 ECU-05를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ECU-05에 대한 전체 보고서는 <https://www.pc-biz.org/search/300120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성공회 용어의 한국어 번역은 주낙현 신부(성공회 영등포 성당 주임 신부)가 감수함